제972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율 인하(강화)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1.비중요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신설) ○ 공매도 목적 상장주권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연장 포함 총 1년으로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 2.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신설) ○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순보유잔고 보고 또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인 법인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무차입공매도 점검을 위한 거래소 자료제출 의무,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 및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1억원 부과 및 금투업자 기관·임직원 제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7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사업시행자 제출서류 및 임시사용승인의 요건(신설) ㅇ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폐지하고자 할 때 인 · 허가 의제 관련 서류와 변경·중지·폐지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준공인가 신청 시에는 건축물 등의 설치내역서와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을 위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공사에 따른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을 요건으로 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2.주거이전비의 보상(신설) ㅇ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가구원 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로 산정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서류 인계의무(신설) ㅇ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될 경우 이전고시, 확정측량, 청산관계, 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등에 인계하도록 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신설) ㅇ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분석 결과보고서(작성기준) 별지 서식 마련 * 작성조건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분석한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1.비중요
5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해양수산부)	1.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등(신설) ㅇ 현행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인증 세부심사기준에 부가하여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설치한 선박은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 마련 ㅇ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운영 중 식별된 미비점 개선 - 인증 점수 산출 기준 정비*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①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설치한 선박은 인증 시 가산점 부여, ② 추진동력원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해당 점수 만점 부여, ③ 환경친화적 선박 등급 기준점수 조정 –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 기자재의 유지 · 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 방법 등 명확화 ㅇ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는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 제도 신설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6조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자동차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해제 기준(신설) ㅇ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법인 · 단체 등의 요건 및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 인력 기준을 정하고,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며, 지정기준 미달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3, 제136조의4	1.비중요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신설)	1.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ㅇ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들이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또는 금융기관을 대신해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포함)과 거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Ⅲ.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Ⅲ의1	
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 등(강화) ㅇ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 구체화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2조, 제47조 2.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강화) ㅇ 반려동물 영업자가 영업시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을 확대,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1.중요 2.중요
9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강화) ㅇ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 ㅇ 등록대상동물의 변경신고 의무 추가 부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1조	1.비중요 2.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지정(강화)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지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조	
10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경찰청)	1.7년 무사고 제도 신청 시, 운전경력 입증 절차 마련(신설) ㅇ ‘7년 무사고’인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경력을 입증하도록 시행령 [별표 3]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1.비중요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1.육아휴직 기간연장 대상인 장애아동의 범위 규정(신설) ㅇ 육아휴직 기간 연장 대상인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1.비중요
1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기술인력의 자격정지 기간(신설) ㅇ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신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3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강화) ㅇ 재생의료기관이 지정 신청 시 표준작업지침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2.재생의료기관의 치료 기록 의무 작성사항 추가(강화) ㅇ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고하도록 함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3.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교육 내용 및 이수기준 설정(신설) ㅇ 재생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는 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4.안전관리기관의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신설) ㅇ 안전관리기관이 안전성 모니터링 과정에서 재생의료기관이 보고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할 수 있도록 함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7.비중요 8.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5.재생의료기관의 치료 이상반응에 대한 조치 확대(강화) ㅇ 재생의료기관이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실시대상자의 신고 등으로 인지한 경우 실시 중지 등 대상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함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6.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 시 조치 확대(강화) ㅇ 재생의료기관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인체세포등을 사용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실시 중단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7.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적용 대상 확대(강화) ㅇ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 장비 · 인력 기준 규정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8.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추가 및 신설(신설) ㅇ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가유산청)	1.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신설) ㅇ「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발굴허가 제한, 등록제한 처분 신설 - 별표2: 영향진단 부실 조사기관 및 책임자 발굴허가 제한 - 별표4: 영향진단을 거짓으로 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 및 책임자 업무정지 - 별표5: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등록취소된 조사기관 등록제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1.비중요
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행정처분 기준(강화·신설) ㅇ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제도인 재심사와 위해성 관리 계획이 위해성 관리제도로 일원화되어 총리령에 규정되어 기존 운영 중이던 재심사와 위해성 관리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1.중요
16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강화(강화) ㅇ「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 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암시·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준수사항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1.중요 2.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 ㅇ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 신설에 따른 판매·광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17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시 의무사항(신설) ㅇ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규정(영업소의 소재지 존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 받기) ㅇ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시 신고기준 적합 확인 서류, 신고요건 점검표 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교육의무(신설) ㅇ 의료기기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12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 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신설) ㅇ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마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준수사항(신설) ㅇ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 마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5.교육 수료증 등의 제출의무(신설) ㅇ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규교육 수료증 또는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신설)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소, 소분 조합실, 소분조합시설 등에 대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소분·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 등을 방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2.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해임 신고 및 준수사항(신설)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해임 신고 절차 및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관리사 전문성 확보 및 소분·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조합 관련 식품사고 발생 방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3.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관리사 안전위생교육(신설)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시간 규정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4.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